

고 소 장

고소인 0 0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주민등록번호: 111111 - 2222222

직업:

피고소인 △ △ △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

직업 :

고 소 사 실

- 1. 고소인은 ○○세의 노령으로 보호자의 부양없이는 하루도 생활하기 힘들고 피고소인과는 모자관계에 있습니다. 고소인은 망 □□□의 배우자로서 □□□의 사망으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.
- 2. 피고소인은 20○○. ○. ○.부터 고소외 □□□을 사귀게 되었고 혼인을 약속하게 되면서 고소인 및 고소외 □□□이 여타 가족이 없는 관계로 모두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부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.
- 3. 하지만 심한 의견충돌로 인하여 고소인과 위 △△△가 자주 말다툼을 하는일이 있었는데, 급기야 20○○. ○.경 위 △△△이 망년회를 하고 만취하여 들어온 것을 고소인이 나무라자 말대꾸를 하며 고소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4. 20○○. ○. 설날 명절을 기회로 피고소인과 고소외 □□□은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한다며 다함께 제주도 관광을 요청했습니다. 이에 고소인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관계로 여행을 거부했지만 피고소인의 완강한 요청으로 할

수 없이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

- 5. 20○○. ○. ○.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○○호텔에 여장을 풀고 하루를 보摹 되었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아침 피고소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상경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떠났고 고소외 □□□과 고소인 두명이 남게 되었습니다.
- 6. 하지만 위 고소외 □□□□도 다음 날 쇼핑을 갔다오겠다고 하며 나갔다가 하루 가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. 계속되는 전화연락에도 피고소인과 고소외 □□□은 연락이 없어 할 수 없이 고소인은 현지 경찰관의 도움으로 상경하여 고소인의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.
- 7. 그러나 고소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소인의 모든 물건들은 없어지고 엉뚱하 게 제3자인 고소외 ■■■가 어제 이 집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며 실내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
- 8. 피고소인은 고소외 □□□과 결탁하여 고소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. 비록 친자식인 피고소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는 고소인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하오니 피고소인을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년 0월 0일

위 고소인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| | | | ō l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출기관 | 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| 공소시효 | ○년(☞공소시효일립www |
| 고소권자 | 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 | 소추요건 | |
| 제출부수 | 고소장 1부 | 관련법규 | 형법 271조 제2항 |
| 범죄성립 요 건 |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노유, 질병 기타의 사유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유기한 때 | | |
| 형 량 | · 10년 이하의 징역 · 1,500만원 이하의 벌금 | | |
| 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 | ○ 근거 : 검찰청법 10조 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○ (재정신청) 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 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○ (헌법소원) 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 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| | |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